

「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4년 2월 1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연구활동비(공청회, 토론회, 간담회, 현장확인 등)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, 연구용역비를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명시(제8조제1항)

3. 개정조례안: 별도 붙임

4. 입법예고기간: 2024. 2. 1. ~ 2024. 2. 7.(7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 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5032, 팩스 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1항 중 “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와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.”를 “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에서 단체 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연구용역비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하되,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연구단체의 지원 등) ① 의 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<u>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와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	제8조(연구단체의 지원 등) ① -- ----- <u>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에서 단 체 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연구용역비는 정책 개발비에서 지원하되, 연구용역 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.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[붙임 2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